

##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5. 28.
- 다. 상정일자 : 97. 6. 24 (제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자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나. 개정사유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

- 다. 주요 내용

- "회계 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안 제3조 제1항)
  -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향)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약"

5. 토론요지

"생약"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73
----------	-------

제출일자 : 1997. 5. 20.

제출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정비코자 함

### 2. 주요골자

- 조의 제목 "회계 공무원임용"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 명령관은 화순군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로 개정 (안 제3조제1항)
-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며  
동조중 "사업"을 "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의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의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증"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회계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수납액"을 "수입액"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을 "기금운영관은"으로 하고  
동조동항 및 동조 제2항중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 조문 대비 표